

집합투자규약 정정 전·후 대비표

1. 펀드명 : 현대인베스트 코스닥 벤처 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
2. 변경적용일 : 2026 년 5 월 27 일
3. 정정사항 :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재정정 등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제18조의 2(벤처기업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재정정 등	<p>①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50% 이상일 것.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<u>제1호</u>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5%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가. (생략)</p> <p>1)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<u>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</u>에 따른 투자</p> <p>2) (생략)</p> <p>나.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<u>아니하게</u>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<u>아니한</u> 기업으로서 법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<u>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제1항</u>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 <u>제1호</u> 및 <u>제2호</u>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</p> <p>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50% 및 15% 이상일 것. 다만,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	<p>①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50% 이상일 것.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<u>1)</u>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5%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1)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<u>1호</u>에 따른 투자. <u>다만, 타인 소유의 주식, 출자지분 또는 채권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는 제외한다.</u></p> <p>2)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<u>않게</u>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<u>않은</u> 기업으로서 법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<u>1)</u> 및 <u>2)</u>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</p> <p>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(<u>투자신탁 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5%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5%로 본다</u>)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50% 및 15% 이상일 것. 다만,</p>

			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부칙		(신설)	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신탁업자 관련 내용	은행장 변경, 지배인 추가	---(이전 생략)--- 은행장 <u>김성태</u> (신설)	---(이전 현행과 같음)--- 은행장 <u>장민영</u> 위대리인 <u>수탁사업부장 권재환</u>